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및 지방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 등 8명을 증원하고
- 증평출장소 농촌지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·인력보강을 위해 괴산군으로부터 이관되는 4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72명 ⇒ 2,484명 (증원 12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16명 ⇒ 1,426명 (증원 10명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⇒ 54명 (증원 2명)

의안전문 : 별 첨

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472명”을 “2,484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416명”을 “1,426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4호중 “52명”을 “54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472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16명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52명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2,484명</u></p> <p>1. : <u>1,426명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: <u>54명</u>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○ 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○ 제21조 (정원의 규정)

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